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09 발의연월일: 2025. 2. 25.

발 의 자:이달희·고동진·서천호

배준영 · 김상훈 · 이헌승

김미애 · 최보윤 · 김정재

김성원 · 김예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구·시·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는 경찰공무원 2명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, 관외사전투표의 등기우편물을 우체국장에게 인계할 때는 후보자 별로 1명씩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 음.

그런데 매 선거마다 투표함 등의 송부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, 송부 시 투표함 탈취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도 있 어 이를 불식시킬 조치가 필요함.

이에,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,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물의 우체국장 인계 및 등기우편물의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(안

제158조제6항제1호 및 제170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8조제6항제1호 후단 중 "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 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"를 "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 각 1명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을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, 우체국장은 인계받은 사전투표 등기우편물이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되는 모든 과정에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이 동행하도록하며"로 한다.

제170조제2항 중 "동반할 수 있다"를 "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158조(사전투표) ① ~ ⑤ (현 제158조(사전투표) ① ~ ⑤ (생 략) 행과 같음)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. 1.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 1. ---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 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 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.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 각 1 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 명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여야 하며, 사전투표관리관이 한 경찰공무원 2명을 해당 우 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,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 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 우체국장은 인계받은 사전투 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표 등기우편물이 구・시・군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되는 유를 기재한다.

- 2. (생략)
- ⑦ · ⑧ (생 략)
- 第170條(投票函 등의 송부) ① 第 (생 략)
 -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函을 송부하는 때에는 候補者別로 投票參觀人 1人과 호송에 필요한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을 2人에 한하여 <u>동반할</u>수 있다. <후단 신설>

	모든	과정이	에 정	복을	한 >	<u>경찰</u>
	공무.	원 2명	이 등	동행ㅎ	노록	하
	며					
2.	. (현	행과 길	음)			
(7	•	⑧ (현	행과	같음	-)	
第1′	70條(投票函	등	의 =	송부)	1
(현행교	가 같음)			
2	<u> </u>					
_						
_						
_						
_				<u>동</u>	행하!	<u> </u>
ठें	 여야	<u>한다</u> .	0) 7	경우	투표	<u>참관</u>
<u></u>]0] >	정당한	사유	없ㅇ] 동현	행 <u>을</u>
<u>ア</u>] 부한	때에	는 그	권형	한을 글	포기
ਨੋ	1 거	0 足	日 口	투표	로에	\neg

사유를 기재한다.